

<의안번호 제2006 - 58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11.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11. 9

2. 개정이유

- 2006. 2.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안 제3조)
-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안 제6조~제8조)
- 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마. 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
- 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13조)
- 아.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173호)
- 행자부 참여여성탐1525(2006. 4. 21)호와 도 여성정책과 4789(2006. 5. 1)

○ 입법예고('06. 8. 25 ~ 9. 14)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 반영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06. 2.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 7.23부터 시행한 기존의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용이 관계법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제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경상남도 본청과 시군의 조례안들을 참고로 하여 현실에 불부합되고 있는 부분이나 표준조례안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부분들이 있어 아주바람직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시달된 표준조례안에서는 생략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부활시킨 사유와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